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4
------------	-----

제출년월일 : 1997. 2. 12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복무조례상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6조의 2>
- 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조정함으로서 연가실시의 합리성을 기함.<안 제18조 제1항>
- 다.년중 병가를 얻지 않는 공무원등 성실한 근무자에게는 다음해에 낸가를 1일 더 가산해 줌으로써 성실근무 유도 <안 제18조 제3항>
- 라. 연가를 반일(오전, 오후)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각, 조퇴, 외출을 시간 단위로 계산토록 하므로서 합리성을 기함.<안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
- 마.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으로서 병가의 합리성을 기함.<안 제20조 제3항>
- 바.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석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사.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9항>

3. 참고사항

- 경남도 총무 12100-1(97. 1. 3)호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하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 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u>13시로 한다.</u></p> <p>②생략</p> <p><u>< 신 설 ></u></p>	<p>제13조(근무시간) ①----- ----- ----- ----- -----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 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 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근속기간</u>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 <u>제직기간</u> -----.
<u>근속기간</u>	<u>연가일수</u>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u>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u>	<u>② ----- 제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직기간을 말하되, -----</u> ----- ----- ----- ----- ----- ----- -----.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p>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 한다.</p> <p>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p>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②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p>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u>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u>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p>
<u>< 신 설 ></u>	

현 행	개 정 안
	<p>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제21조(병가) ①----- ----- ----- ----- ----- ----- <u>자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u> <u>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1.·2.(생 략) ②·③(생 략)</p>	<p>1.·2.(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7.(생 략) 〈신설〉</p>	<p>제22조(공가) ----- ----- ----- ----- 1.~7.(현행과 같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p>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 ⑧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⑥ ----- 제작 ----- ----- --- 장기재작휴가 ----- ----- 재작기간 ----- -----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 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 . ----- 30일 ----- -----
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외여행) ----- ----- -----